

김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하수도) 결정(변경)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30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9. 4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9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6-3번지 일원에 기존 하수도로 통합 결정된 진입도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도로와 하수도로 각각 구역계를 분리 결정하여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 및 명확한 관리주체를 설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
1) 교통시설

가)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중로	3	65	14	국지 도로	38	고촌읍 신곡리 127-15	고촌 레코파크 (공공하수 처리시설)	일반 도로	-	-	-

나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중3-65호	도로	· 도시계획시설(도로)신설 L=38m, B=14.0m	· 기존 하수도로 통합된 시설을 분리 결정하여,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 수립

2) 환경기초시설

가) 하수도(공공하수처리시설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②	하수도	공공하수처리시설	고촌읍 신곡리 156-3번지 일원	6,803	감)522	6,281	김포시 고시 제2005-125호 (2005.11.14.)	

나)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②	하수도 (공공하수처리시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수도(공공하수처리시설) 구역계 변경 ·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6-3번지 일원 · 면적 : 기정 6,803㎡ 변경 6,281㎡ 감) 522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수도로 통합 결정된 도로 및 하수도의 구역계 분리결정으로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 및 명확한 관리주체 설정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기존 하수도로 통합 결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의 구역계를 하수도 구역계와 분리 결정해 효율적인 관리체계 수립 및 명확한 관리주체를 설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,
- 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하수도) 결정(변경)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